

묘란?



재배용으로 쓰이는 씨앗을 뿌려 발아시킨 어린 식물체와
그 어린 식물체를 서로 접목(接木)시킨 어린 식물체

육묘업 등록

채소·화훼·식량작물의 **묘(모종)**를 생산하여 판매하려면
대표자가 **전문교육을 이수한 후 시설·장비를 갖추고** 주된 생산
시설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등록**(종자산업법 제37조의2)

육묘업 시설기준(종자산업법 시행령 제15조의2)

공통	- 개별기준의 시설에 대하여 소유권이나 임차권 등 사용권을 확보할 것 - 두 가지 이상의 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시설의 철재하우스 면적 기준은 재배하는 작물의 철재하우스 면적 기준 중 가장 넓은 기준을 적용할 것	
	채소작물 또는 화훼작물	- 파 또는 양파의 묘를 노지에서 생산하는 경우 - 노지 면적: 990㎡ 이상일 것 - 환경조절장치: 관수장치를 갖추 것 - 채소 또는 화훼의 묘를 생산하는 경우(파, 양파 제외) - 철재하우스 면적: 990㎡ 이상일 것 - 환경조절장치: 환풍기, 난방기(난방기가 필요한 작물만 해당함) 및 관수장치를 갖추 것 - 병해충 차단시설: 방충망을 갖추 것 - 육묘벤치를 설치할 것 - 철재하우스 바닥과 토양을 격리할 것 - 콘크리트·부직포·자갈·보도블록 깔기
개별	식량작물	- 철재하우스 면적: 250㎡ 이상일 것 - 환경조절장치: 차광장치와 관수장치를 갖추 것 - 철재하우스 바닥과 토양을 격리할 것 - 콘크리트·부직포·자갈·보도블록 깔기

교육기관

- 국립종자원 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 (054-810-1512)
- 서울대학교 채소육종연구센터 (02-880-4945)
- 경북대학교 친환경농업연구센터 (054-383-9796)
- 원광대학교 식물육종연구소 (063-850-6829)

묘의 품질표시

묘(모종) 용기나 포장에 다음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 ① 작물명 ② 품종명 ③ 파종일 ④ 생산자명 ⑤ 육묘업등록번호

종자산업법 위반 주요 벌칙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종자업 미등록 (종자산업법 제37조 위반) - 품종 생산·수입·판매 미신고 종자 판매 (종자산업법 제38조 위반)	- 미보증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종자산업법 제36조 위반) - 육묘업 미등록 (종자산업법 제37조의2 위반) - 수입적응성시험을 받지 않은 종자 수입(종자산업법 제41조 위반)

종자산업법 위반 주요 과태료 부과기준

위반행위	과태료(단위: 만원)				
	1회	2회	3회	4회	5회 이상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하여 종자 및 묘를 판매하거나 보급한 경우(종자산업법 제43조 위반)	100	300	500	700	1,000
출입, 조사·검사 또는 수거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종자산업법 제45조 위반)	100	300	500	700	1,000
발아 보증 시한이 지난 종자, 품질표시를 하지 않은 종자 및 묘를 진열·보관한 경우(종자산업법 제44조 위반)	10	30	50	70	100
종자관리사 정기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종자산업법 제27조제3항 위반)	10	30	50	70	100

종자산업법 위반 주요 행정처분

위반행위	위반 횟수별 행정처분기준		
	1회	2회	3회 이상
신고하지 않은 종자를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한 경우(종자산업법 제38조 위반)	영업정지 90일	영업정지 180일	등록취소
품질표시를 하지 않은 종자 또는 묘를 판매·보급하는 경우(종자산업법 제43조 위반)	영업정지 3일	영업정지 30일	영업정지 60일
종자업자가 종자관리사를 두지 않은 경우(종자산업법 제37조 위반)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30일	등록취소
수입 적응성시험을 받지 않은 외국산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한 경우(종자산업법 제41조 위반)	영업정지 90일	영업정지 180일	등록취소



39660 경북 김천시 혁신 8로 119(율곡동)

책임운영기관

국립종자원

종자업·육묘업 등록 문의	054-912-0166
종자·묘 부정·불법 유통 신고	054-912-0170
품종 생산·수입 판매 신고	054-912-0115

수도권팀: 031-8058-2009 강원지원: 033-433-2515 충북지원: 043-649-3731
 충남지원: 041-540-4114 전북지원: 063-530-3650 전남지원: 061-323-0702
 경북지원: 054-858-9659 경남지원: 055-355-2578 제주지원: 064-900-3014
 동부지원: 033-336-6246 서부지원: 063-862-7667

종자·묘 유통관리제도



책임운영기관

국립종자원

종자란?



증식용·재배용 쓰이는 씨앗, 버섯 종균(種菌), 묘목(苗木), 포자(孢子) 또는 영양체(營養體)인 잎·줄기·뿌리 등

종자업 등록

종자를 생산·가공 또는 다시 포장(包裝)하여 판매 하려면 시설·장비를 갖추고 종자관리사를 두어, 주된 생산시설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등록(종자산업법 제37조)

종자업의 시설기준(종자산업법 시행령 제13조)

공통

시설	개별기준의 시설에 대하여 소유권이나 5년 이상의 임차권 등의 사용권을 확보할 것(다만, 종자를 가공하여 판매만 하거나 종자를 다시 포장(包裝)하여 판매만 하는 경우에는 개별기준의 시설을 갖추지 않을 수 있음)
장비	개별기준의 장비에 대하여 소유권이나 임차권 등 사용권을 확보할 것(다만, 묘목 및 영양체만을 생산하는 경우 및 성형된 버섯 종균을 다시 포장하여 판매만 하는 경우에는 개별기준의 장비를 갖추지 않을 수 있음)

개별



채소

시설	① 철재하우스: 330㎡ 이상일 것 ② 육종포장(育種圃場): 3,000㎡ 이상일 것
장비	정선기, 건조기, 포장기, 수분측정기 및 발아시험기 각 1대 이상일 것



화훼

시설	① 교배 방법의 경우	- 철재하우스: 330㎡ 이상일 것 - 육종포장: 3,000㎡ 이상일 것
	② 조직배양방법의 경우	- 실험실: 100㎡ 이상일 것 - 현미경(500배 이상일 것): 1대 이상일 것
장비	정선기, 건조기 및 포장기 각 1대 이상일 것	



과수

시설	① 묘목포장(苗木圃場): 7,000㎡ 이상일 것 ② 어미나무: 결실되는 나무 품종당 5그루 이상이 자기 소유일 것 다만, 종자 관련 검정 기관이 병해충이 없음을 인정한 어미나무에서 생산된 접수(接樹)를 공급 받는 경우에는 자기 소유의 어미나무를 구비하지 않아도 됨
	정선기, 건조기, 포장기, 수분측정기 및 발아시험기 각 1대 이상일 것



버섯

시설	① 실험실: 16.5㎡ 이상일 것 ② 준비실: 49.5㎡ 이상이며, 수도시설이 설치되어 있을 것 ③ 살균실: 23.0㎡ 이상일 것 ④ 냉각실: 16.5㎡ 이상이며, 에어컨 또는 냉각시설이 설치되어 있을 것 ⑤ 접종실: 13.2㎡ 이상이며, 무균상태를 지속할 수 있는 시설 및 자외선 등이 설치되어 있을 것 ⑥ 배양실: 165.0㎡ 이상이며, 실온을 20~25℃로 조절할 수 있는 항온 장치시설이 설치되어 있을 것 ⑦ 저장실: 33.0㎡ 이상이며, 실온을 1~5℃로 조절할 수 있는 냉각시설이 설치되어 있을 것
	장비
장비	① 실험실: 현미경(1,000배 이상) 1대, 냉장고(200ℓ 이상) 1대, 소형 고압살균기 1대, 항온기 2대, 건열 살균기 1대 이상일 것 ② 준비실: 입병기 1대, 배합기 1대, 자숙속 1대 (양송이 생산자만 해당) ③ 살균실: 고압 살균기(압력: 15~20LPS, 규모: 1회 600병 이상), 보일러(0.4톤 이상일 것)



식량작물(벼, 보리, 콩, 옥수수, 감자)

시설	① 철재하우스: 330㎡ 이상일 것 ② 육종포장: 3,000㎡ 이상일 것
장비	현미경(1,500배 이상일 것), 정선기, 포장기, 발아시험기(감자 제외), 건조기(감자 제외) 및 수분측정기(감자 제외) 각 1대 이상일 것



그 밖의 작물(사료작물 및 특용작물 등)

시설	육종포장(1,000㎡ 이상일 것)
장비	정선기, 포장기, 건조기(인삼 제외) 각 1대 이상일 것

종자관리사를 두어야 종자업 등록을 할 수 있는 작물(39종)

식량작물	벼, 보리, 콩, 옥수수, 감자
과수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단감, 자두, 매실, 참다래, 감귤
채소	무, 배추, 양배추, 고추, 토마토, 오이, 참외, 수박, 호박, 파, 양파, 당근, 상추, 시금치
버섯	양송이, 느타리버섯, 뽕나무버섯, 영지버섯, 만가닥버섯, 앞새버섯, 목이버섯, 팽이버섯, 북령, 버들송이, 표고버섯
종자관리사 정기교육	종자 보증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종자관리사는 2년에 1회 6시간 이상의 교육 이수 필수

품종 생산·수입 판매 신고

품종보호 출원 공개된 품종, 국가품종목록에 등재된 품종 외의 종자를 생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는 해당 종자를 정당하게 취득하였음을 입증하는 자료와 종자 시료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함(종자산업법 제38조)

신고방법	우편 / 방문 / 온라인 www.seednet.go.kr
신고문의	국립종자원 품종보호과 054-912-0115

종자의 품질표시

국가보증 대상이 아닌 종자나 자체 보증을 받지 아니한 종자 또는 무병화인증을 받지 아니한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하는 자는 종자의 용기나 포장에 다음 사항을 품질표시 하여야 함(종자산업법 제43조)

- | | |
|----------------|-----------------------|
| ① 품종명 | ② 무게 또는 낱알 개수 |
| ③ 발아율(버섯은 접종일) | ④ 발아보증시한 |
| ⑤ 생산연도(포장연월) | ⑥ 재배 시 주의사항 |
| ⑦ 수입연월 및 수입자명 | ⑧ 종자업등록번호 |
| ⑨ 생산·수입판매신고번호 | ⑩ 품종보호 출원공개번호 또는 등록번호 |

※ 벼·보리·콩·옥수수·감자의 경우는 보증표시를 하여야 함.
 ※ 사과·배·복숭아·포도·감·감귤류·자두·매실·참다래·뽕나무 묘목의 경우 규격표시를 하여야 함.
 ※ 영양체, 묘목은 발아율 및 발아보증시한 표시 제외